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월 일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여 물품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증품의 취득 규정 개정(안 제11조①)

- 상위법에 따라 기증품의 취득 시 “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”를 “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”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부분 개선

나. 용어정비(안 제21조①, 제22조②, 제27조① 및 동조 ②, 제29조①, 제33조)

- “소속기관의 장 또는 청·소의 장”을 “소속기관의 장 또는 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의 장”으로 정비

- “망실·훼손의 사실 조사 보고 시 군수 또는 청·소의 장”을 “물품관리관”으로 정비

- 물품관리사무 검사 시 물품관리관과 청·소의 장에서 청·소의 장을 삭제하고 물품관리관으로 정비

다. 타직원에 의한 인계 근거 규정 개정(안 제33조)

- 타직원에 의한 물품출납사무 인계 시 제33조에서 제32조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라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2019. 8. 27.~ 2019. 9. 16.(20일간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군”을 “성주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.)”으로 한다.
제11조제1항 중 “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”를 “성주군기부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제21조제1항 중 “소속기관”을 “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”로 한다.
제22조제2항 중 “군수 또는 청·소의 장”을 “물품관리관”으로 한다.
제27조제1항 중 “물품관리관(과장이 있는 청·소 포함)이 기타 청·소의 경우에는 청·소의 장”을 “물품관리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청·소”를 “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”로 한다.
제29조제1항 중 “청·소”를 “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”로 한다.
제33조 중 “청·소”를 “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제33조”를 “제3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・보관・사용・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 성주군(이하 "군"이라 한다.)----------.
제11조(기증품의 취득)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)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(이하 "기부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	제11조(기증품의 취득) ①----------성주군기부심사위원회-----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일시보관)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06. 8. 11.>	제21조(일시보관) ①----------의회사무과・직속기관・사업소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물품의 망실・훼손보고) ① (생략)	제22조(물품의 망실・훼손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 또는 청・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②----------물품관리관----------.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27조(물품관리사무의 검사) ①영 제90조	제27조(물품관리사무의 검사) ①

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(과장이 있는 청·소 포함)이 기타 청·소의 경우에는 청·소의 장이하여야 한다. <전문개정 2006. 8. 11.>	----------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----------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청·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.	②---------- 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 ----------.
제29조(물품검사서)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청·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29조(물품검사서) ① ---------- 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3조(타직원에 의한 인계)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청·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	제33조(타직원에 의한 인계) ---------- 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 ---------- 제32조 ----------.

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주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.)의 물품의 취득・보관・사용・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1조(기증품의 취득)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)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성주군기부심사위원회(이하 “기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)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.

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전문개정 2006. 8. 11.>

삭제 <2006. 8. 11.>

제3장 보관

제21조(일시보관)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・직속기관・사업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06. 8. 11.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8. 11.>

제22조(물품의 망실・훼손보고)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・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 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한다. <개정 2006. 8. 11.>

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・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8. 11.>

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・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

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8. 11.>

제5장 검사 및 인계

제27조(물품관리사무의 검사)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. <전문개정 2006. 8. 11.>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.

제29조(물품검사서)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.

제33조(타직원에 의한 인계)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·직속기관·사업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